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11.2.~12.10.)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5회 정례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14건

상 임 위 원 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1. 12. 10.)
기획행정 위원회 (5)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허소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소영 의원	원안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수정가결
	강원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박윤미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3)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미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수정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2)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남상규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김혁동 의원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1)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5회 정례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1. 12. 10.(금)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0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 공동발의 :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관련자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사업, 도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등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덕수 의원



김병석 의원



나일주 의원



박병구 의원



박윤미 의원



위호진 의원



정수진 의원



정유선 의원



조형연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철원2)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교육,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허소영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윤석훈 의원



한금석 의원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 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한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2021년 7월 2일 일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바, 그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강원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 조례」,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등의 개정함으로써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심영미 의원



정수진 의원



조성호 의원



최종희 의원



허민영 의원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 공동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는 경우에 그 협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호 의원



권순성 의원



김경식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 공동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내 수소융합에너지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연구 기반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전문생산기관기술연구소 및 도의 출자 · 출연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기반 조성과 관련되는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 ·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연구기관 유치 ·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자문위원회를 둔다.



허소영 의원



남상규 의원



원태경 의원



이종주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강원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강원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홍보,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 운영,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 ·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 ·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윤지영 의원



박효동 의원



권순성 의원



김병석 의원



김수철 의원



김진석 의원



조성호 의원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1),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A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wearing glasses, a white shirt, a blue tie, and a dark suit jacket.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neutral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colored wall.

Dr. Yoon Hyeon is a female with short dark hair, wearing a dark blue blazer over a white top. She is smiling and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허민영 의원

■ 대표발의 :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3)
 ■ 공동발의 :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허민영 의원

▣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강원도 내 지속적이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인력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내외인력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력 수급관리 총괄, 구인 · 구직 정보제공과 일자리 연계, 민 · 관 협력 및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농업인력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도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업인력을 농번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장덕수 의원



박효동 의원



김정중 의원



김진석 의원



위호진 의원



정수진 의원



조성호 의원

▣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신도현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홍천2),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심영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4),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함종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맞게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치유농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 · 군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등 각종 지원, 치유농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영미 의원



박효동 의원



신도현 의원



권순성 의원



신명순 의원



심영섭 의원



위호진 의원



주대하 의원



함종국 의원

▣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정선1),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정수진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 내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하고자 「강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진료비를 표시하고자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태경 의원



박효동 의원



장덕수 의원



김정중 의원



김수철 의원



정수진 의원



주대하 의원



최종희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남상규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4)

■ 공동발의 : 김정중 의원(농림수산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양양), 김형원 의원(경제건설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동해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반태연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3),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시스템 구축 및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남상규 의원



김정중 의원



김형원 의원



김혁동 의원



반태연 의원



정유선 의원



조성호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 공동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공무직을 지휘 · 감독하고 임면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보수를 정한다. ④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시행한다.



김혁동 의원



정유선 의원

▣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준섭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2)

■ 공동발의 : 박효동 의원(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고성)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 · 관리되도록 하고자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강원도의회 동의 받아야 하며 교육감이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위탁사무 내용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증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준섭 의원



박효동 의원